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1.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15일 이상 (8시간) 이용	10% 증액		20% 증액			-
	2,764,190	2,564,320	1,833,840	1,691,640	1,450,68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이상, 월 15일이상 이용시 등급별 월한도액(10%~20%이내) 증액 산정 할 수 있음 (가족요양제외)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등 급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월 이용료(15%) (20일기준)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장기요양 1등급	평 일	41,820	6,273	3,764	2,509	125,460
		공휴일	54,366	8,155	4,893	3,262	163,098
	장기요양 2등급	평 일	38,720	5,808	3,485	2,323	116,160
		공휴일	50,336	7,550	4,530	3,020	151,008
	장기요양 3등급	평 일	35,740	5,361	3,217	2,144	107,220
		공휴일	46,462	6,969	4,182	2,788	139,386
	장기요양 4등급	평 일	34,120	5,118	3,071	2,047	102,360
		공휴일	44,356	6,653	3,992	2,661	133,068
	장기요양 5등급	평 일	32,490	4,874	2,924	1,949	97,470
		공휴일	42,237	6,336	3,801	2,534	126,711
	인지지원등급	평 일	32,490	4,874	2,924	1,949	97,470
		공휴일	42,237	6,336	3,801	2,534	126,711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장기요양 1등급	평 일	56,060	8,409	5,045	3,364	168,180
		공휴일	72,878	10,932	6,559	4,373	218,634
	장기요양 2등급	평 일	51,930	7,790	4,674	3,116	155,790
		공휴일	67,509	10,126	6,076	4,051	202,527
	장기요양 3등급	평 일	47,940	7,191	4,315	2,876	143,820
		공휴일	62,322	9,348	5,609	3,739	186,966
	장기요양 4등급	평 일	46,300	6,945	4,167	2,778	138,900
		공휴일	60,190	9,020	5,417	3,611	180,400
	장기요양 5등급	평 일	44,650	6,698	4,019	2,679	133,950
		공휴일	58,045	8,707	5,224	3,483	174,135
	인지지원등급	평 일	44,650	6,698	4,019	2,679	133,950
		공휴일	58,045	8,707	5,224	3,483	174,135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장기요양 1등급	평 일	69,730	10,460	6,276	4,184	209,190
		공휴일	90,649	13,597	8,158	5,439	271,947
	장기요양 2등급	평 일	64,590	9,689	5,813	3,875	193,770
		공휴일	83,967	12,595	7,557	5,038	251,901
	장기요양 3등급	평 일	59,640	8,946	5,368	3,578	178,920
		공휴일	77,532	11,630	6,978	4,652	232,596
	장기요양 4등급	평 일	58,010	8,702	5,221	3,481	174,030
		공휴일	75,413	11,312	6,787	4,525	226,239
	장기요양 5등급	평 일	56,360	8,454	5,072	3,382	169,080
		공휴일	73,268	10,990	6,594	4,396	219,804
	인지지원등급	평 일	56,360	8,454	5,072	3,382	169,080
		공휴일	73,268	10,990	6,594	4,396	219,804

※ 식대비(중식 4,000원 / 석식 4,000원 / 간식 1,000원) & 개인소모품 비용 별도

※ 공휴일은 평일기준 30% 가산됨 (2026. 1. 1 시행)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히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율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대상

(1) 기본원칙

-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나. 비 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 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 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2) 비급여 항목별 세부기준 및 비율

1) 식사재료비

가) 중·석식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써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 중식비/1인기준 : 1식 4,000원×20회(20일기준) = 80,000원

* 석식비/1인기준 : 1식 4,000원×20회(20일기준) = 80,000원

- *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 간식비/1인기준 : 1회 1,000원 × 20회(20일기준) = 20,000원

2) 이·미용비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하지만, 정기적 이·미용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이·미용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2. 비급여항목외 실비 수납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가)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나)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
(수급자의 자비 부담)

-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가)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 나)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자비부담)
 - *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 시 드는 택시비용 등
- 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가)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나)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2) 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가)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나)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 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 나.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3. 기타사항

- 1)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수납 가능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2)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실시함